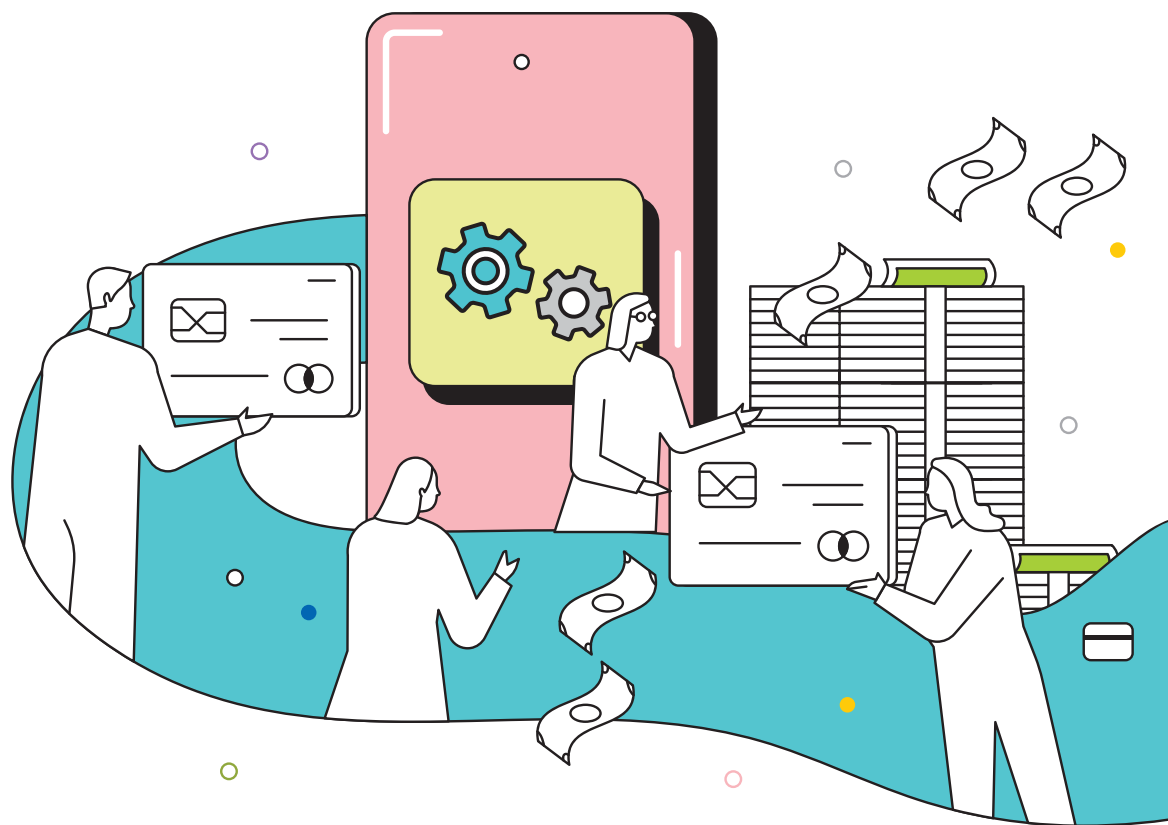


2024년
기업매뉴얼

고용형태 공시제도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2024



고용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도

고용형태 공시제도는

사업주가 매년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고용정보시스템에 공개적으로
게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의6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제4조

(요약) 고용형태 공시제도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근 거	「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의6(고용형태 현황 공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 사업주)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제4조(고용형태 공시절차 등)
목 적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 유도
대 상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방 법	매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고용형태 현황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고용정보시스템(워크넷)에 공시 * 고용형태공시제 사이트(www.work.go.kr/gongsi)
공시 사항	〈고용형태 현황〉 ① 소속 근로자 수 ※ 소속 근로자: 해당 사업체(법인)에서 고용하고 있는 전체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② 소속 외 근로자 수 ※ 소속 외 근로자: 해당 사업체(법인)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파견 근로자, ▲용역 근로자, ▲하도급 근로자 등 ③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 업무내용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한국고용직업분류(중분류)상 소속 외 근로자가 해당 사업체(법인)에서 수행하는 주요 업무

01_ 고용형태 공시제도 개요 08

〈붙임 1〉 고용형태 공시제도 관련 법령	10
〈붙임 2〉 고용형태 공시 서식(고용형태 현황)	11
〈붙임 3〉 고용형태 공시제도 주요 추진 경과	12

02_ 공시 대상 및 내용 13

1. 공시 대상	13
① 대상 사업주	13
② 상시근로자 산정방법	15
2. 공시 내용	18
① 소속 근로자 수	19
② 소속 근로자 특기사항	27
③ 소속 외 근로자 수	28
④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 업무내용	31

03_ 공시 방법 32

① 공시 기준시점 및 공시 기한	32
② 회원 가입 및 아이디 관리	33
③ 공시정보 입력	34
④ 고용형태 현황 공시정보 공개(8월 중)	37
〈붙임 4〉 파견, 용역, 사내하도급의 개념	38
〈붙임 5〉 한국고용직업분류(2018 분류표)	40
〈붙임 6〉 고용형태 공시제도 관련 문의처	53

주요 Q&A

< 공시 대상 >

1. 건설업은 업종 특수성으로 인해 상시근로자 수 산정, 산재보험 성립 등에 있어 건설현장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고용형태 현황을 어떻게 공시해야 하나요? 14
2. 학교법인의 경우 하나의 법인 아래 대학과 대학병원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고용형태 현황을 어떻게 공시해야 하나요? 14
3. 공시 기준시점(3.31.)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가 300명 미만인 경우에도 고용형태 공시를 해야 하나요? 14

< 공시 내용 - 소속 근로자 >

4. 기업 임원도 공시 대상 근로자로 포함해야 하나요? 21
5.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파견사업주의 경우, 해당 사업주가 사용하여 파견하는 근로자를 소속 근로자로 공시해야 하나요? 21
6. 기간제 근로자 중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된 근로자도 있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도 있는데 모두 공시해야 하나요? ... 21
7. 국내 법인이 해외 사업장에 국내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 해당 근로자도 소속 근로자로 공시해야 하나요? 21
8.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사립대학교 교수, 교사 등도 소속 근로자로 공시해야 하나요? ... 22
9. 2년 미만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도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22

10.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가요, 기간제 근로자인가요?.....23
11. 건설업 등의 경우, 직접 고용한 단순노무자 또는 일용근로자가 있는데 어느 항목에 공시해야 하나요?.....23
12. 통상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구별 기준은 무엇인가요?24
13. 사업주간 ‘납품계약’에 의한 근로자도 공시의무 사업주의 사용 근로자로 보아야 하나요? ...26
14. 공시의무 사업주의 사업장에 간헐적·임시적으로 출입하는 근로자도 공시의무 사업주의 사용 근로자로 보아야 하나요?26
15. 건설 현장의 덤프트럭, 타워크레인, 레미콘, 굴삭기 등의 운전기사도 공시의무 사업주의 사용 근로자로 보아야 하나요?26

〈공시 내용 - 소속 외 근로자〉

16. 소속 외 근로자를 ‘사용’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며, 직접고용 관계에서의 ‘사용’과 의미상 어떤 차이가 있나요?29
17. 기업에서 특정 업무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하도급 업체가 동 업무를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어 하도급업체와 재하도급 업체가 원청업체에 들어와 함께 작업을 하는 경우 소속 외 근로자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29
18. 신사옥 건설을 위하여 도급 계약 체결 후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옥 건설을 위한 건설 도급 근로자들도 소속 외 근로자에 포함해야 하나요?.....30
19. 병원, 백화점, 마트 등 임대매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소속 외 근로자에 포함해야 하나요?30

01 고용형태 공시제도 개요



🔍 고용형태 공시제도는

- ①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②매년
- ③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 ④고용정보시스템에 공개적으로 게시하도록 하는 제도

💬 (배경) 비정규직과 사내하도급 활용에 따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 ❶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함으로써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14년)
- ❷ 공공기관에 준하는 사회적 책임을 선도할 수 있는 일정규모 이상(상시 300인 이상) 대기업에 대하여 운영

💬 (근거) 「고용정책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연도별 공시의무 대상 기업 및 공시율

- * ('23) 공시의무 대상 기업 3,900개 중 3,887개 공시(공시율 99.9%)
- * ('22) 공시의무 대상 기업 3,688개 중 3,687개 공시(공시율 99.9%)
- * ('21) 공시의무 대상 기업 3,556개 중 3,555개 공시(공시율 99.9%)
- * ('20) 공시의무 대상 기업 3,520개 중 3,520개 공시(공시율 100%)
- * ('19) 공시의무 대상 기업 3,456개 중 3,454개 공시(공시율 99.9%)
- * ('18) 공시의무 대상 기업 3,480개 중 3,478개 공시(공시율 99.9%)
- * ('17) 공시의무 대상 기업 3,418개 중 3,407개 공시(공시율 99.7%)
- * ('16) 공시의무 대상 기업 3,464개 중 3,454개 공시(공시율 99.7%)
- * ('15) 공시의무 대상 기업 3,240개 중 3,233개 공시(공시율 99.8%)
- * ('14) 첫 시행, 공시의무 대상 기업 2,947개 중 2,943개 공시(공시율 99.8%)

☞ (공시의무 사업주)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하며, 공시의무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상시 근로자 수는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 수만을 말함

☞ (공시시점·기한) 매년 3월 31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공시

☞ (공시 내용) 공시의무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여 사용하는 근로자(소속 근로자) 뿐만 아니라,

-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공시의무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소속 외 근로자(파견, 하도급, 용역 근로자 등)도 공시

* 「사용」의 의미: (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 (하도급, 용역 등의 경우에는) 임금·근로 등에 대한 권한은 없지만 공시의무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도급·용역 등을 받은 업무를 수행

☞ (공시 방법)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영하는 ‘고용정보시스템(워크넷)’에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입력

* 고용형태공시제 전용 사이트(www.work.go.kr/gongsi)에 최근 3년 동안의 공시내용을 알 수 있도록 운영

참고 공공기관의 고용형태 공시

-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공시로 고용정책기본법상의 고용형태 현황 공시를 갈음할 수 있음(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공개시스템(알리오, www.alio.go.kr)에 공시

- 공시내용: 일반현황, 기관운영(임직원수, 임원현황, 신규채용 및 유연근무 현황, 임원 연봉, 직원평균보수, 기관장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임원 국외출장 내역, 노동조합 관련 현황, 내부규정, 징계현황, 소송 및 법률자문 현황,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운영현황 등), 주요 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정보공개

→ ‘임직원 수’ 항목에 정원 및 현원, 무기계약직,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기타), 비정규직 전환비율, 소속 외 인력을 정기공시(연4회 분기별)

붙임1 고용형태 공시제도 관련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6(고용형태 현황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형태, 공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 사업주) ① 법 제15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고용형태 공시절차 등) ① 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그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근무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1.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2.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근로자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단시간근로자
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 등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형태 현황 공시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이하 “고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한다. 이 경우 고용정보시스템은 최근 3년(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3년 미만인 사업주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동안의 공시내용을 알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을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공시함으로써 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른 공시를 갈음할 수 있다.

붙임2 ▶ 고용형태 공시 서식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고용형태 현황

사업체 (법인)	사업체명(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공시내용	① 소속 근로자	구분	합계	남성 근로자 수	여성 근로자 수
		합계	명	명	명
		② 단시간근로자 수 합계 (④ + ⑥)	명	명	명
		③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수	명	명	명
		④ 단시간근로자 수	명	명	명
		⑤ 기간제근로자 수	명	명	명
		⑥ 단시간근로자 수	명	명	명
	⑦ 특기사항				
	소속 외 근로자	⑧ 소속 외 근로자 수	명	명	명
		⑨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 업무내용			

작성방법

- ① 소속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체(법인)에서 고용하고 있는 전체 근로자를 말합니다.
- ② 단시간근로자 수: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합니다)로서 해당 사업체(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전체 단시간근로자 수를 말합니다. ④ 단시간근로자 수(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수)와 ⑥ 단시간근로자 수[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근로자”라 합니다)인 단시간근로자 수]의 합계를 적습니다.
- ③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수: 해당 사업체(법인)에서 고용하고 있는 정규직 등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수를 말합니다. 단시간근로자 중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 ⑤ 기간제근로자 수: 해당 사업체(법인)에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수를 말합니다. 단시간근로자 중 기간제근로자인 단시간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 ⑦ 특기사항: 출산·육아로 휴직한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고용촉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나 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한 경우 등의 특기사항을 적습니다.
- ⑧ 소속 외 근로자 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등 해당 사업체(법인)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수를 적습니다.
- ⑨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 업무내용: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한국고용직업분류(중분류)를 참고하여 소속 외 근로자가 해당 사업체(법인)에서 수행하는 주요 업무를 모두 적습니다.
- ⑩ 근로자 수의 산정기준일은 매년 3월 31일입니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근무일을 말합니다.

붙임3 고용형태 공시제도 주요 추진 경과

- 💬 ('14년) 공공기관에 준하는 사회적 책임을 선도할 수 있는 **일정규모 이상**(상시 300인 이상) **대기업에 대하여 제도 시행**
- 💬 ('18년) 상시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사업체 단위의 고용형태 현황과 함께,
 - ① **사업장 단위의 고용형태 현황**과 ② **소속 외 근로자***가 수행하는 **주요업무 내용**도 공시하도록 변경
 - * 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파견·용역·하도급 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
- 💬 ('22년) 상시 '300~999인' 사업주도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 업무내용**을 공시하도록 개선
- 💬 ('23년) 상시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공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사업장 단위의 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 삭제**

고용형태 공시 관련 법령 개정

- 📍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 발의(의원입법, '12.5.30)
- 📍 「고용정책 기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시행('13.6.19)
-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15.3.1 시행): 상시 사용 근로자수 산정방법 변경
-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15.3.2 시행): 공시기준일 및 공시기한, 공시내용(별지 서식) 변경
-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17.11.21 시행): 상시 1,0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단위의 고용형태 현황 공시 및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업무 내용 공시
 - * 시행시기: ('18년) 3,000인 이상, ('19년) 1,000인 이상
-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22.2.24 시행): 상시 300~999명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도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업무 내용 공시
-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23.12.5 시행): 상시 1,000명 이상 사업주의 사업장별 공시 의무 삭제

02 공시 대상 및 내용



01 공시 대상

① 대상 사업주

☞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고용형태 현황 공시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며,

- ① 공시의무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300명은 직접 고용 근로자수



- ▶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6(고용형태 현황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 사업주) ① 법 제15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 공시의무 대상은 **사업체(법인)단위**로 이루어져야 하며, 여기서 사업이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로 **장소에 관계없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 되는 기업 조직은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

- ① 사업주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의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합산하여 공시
 - 은행 지점, 건설업체 현장 등 수 개의 지점(영업소) · 사무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 · 운영 되는 경우 **본사에서** 사업장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파악하여 **합산 공시**
- ① 동일 그룹 계열사라도 각각 별도의 법인체인 경우 법인단위로 공시하고, 대표이사나 경영진이 동일하더라도 법인이 다른 경우 법인단위로 공시

고용형태 공시제 Q&A: <공시 대상>



Q1 건설업은 업종 특수성으로 인해 상시근로자 수 산정, 산재보험 성립 등에 있어 건설현장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고용형태 현황을 어떻게 공시해야 하나요?

- ➔ 고용형태 공시제는 업종의 차이가 없으며, 건설업의 경우도 하나의 법인인 경우 현장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파악하여 합산 후 일괄 공시해야 합니다.



Q2 학교법인의 경우, 하나의 법인 아래 대학과 대학병원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고용형태 현황을 어떻게 공시해야 하나요?

- ➔ 원칙적으로 사업장이 독립되어 있어도 하나의 법인인 경우 본사에서 일괄 공시해야 합니다. 다만, 학교와 대학병원에 각각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고,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사업장별로 분리하여 입력·공시할 수 있습니다.

* 공시의무 사업주(상시 300명) 산정시에는 합산하고, 공시만 분리 가능

- ➔ 분리 공시할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지청) 고용형태공시제 담당자에게 사업장별로 인사·회계·노무상 독립성이 인정됨을 증명하고, 분리 공시를 위한 공시 ID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Q3 공시 기준시점(3.31.)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가 300명 미만인 경우에도 고용형태 공시를 해야 하나요?

- ➔ 공시의무 사업주인 ‘상시 300명 이상’의 기준시점은 전년도(월평균)입니다. 따라서 금년 3.31.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가 300명 미만이라도, 전년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는 공시를 해야 합니다.
- ➔ 올해에 신설된 법인인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 기준으로 사용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면 공시를 해야 합니다.

② 상시근로자 산정방법

개념

- ① 상시근로자는 상용, 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 산정기간 중 **출산휴가, 병가, 육아휴직, 결근 등의 사유로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업주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 ②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 사업주)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 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02. 공시 대상 및 내용

산정방법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 ①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 수로 나눠 산정

$$\text{상시근로자 수} = \frac{\text{전년도 매월 말일 근로자 수의 합계}}{\text{전년도 조업 개월 수}}$$

예시 '22년에 매월 말일 사용한 근로자의 수의 합이 10,000명, 조업 개월 수가 12개월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 상시근로자수 = 833.3명 (10,000명 ÷ 12개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제2조(정의)

-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시근로자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수로 나눈 수.

다만,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하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를 말하며, 이 경우 “공사실적액”이란 총공사실적액(해당 보험연도 건설공사의 총 기성 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건설업 월평균보수”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상용근로자 수 5명 이상인 건설업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고시하는 평균보수를 말한다.

$$\frac{\text{전년도 공사실적액} \times \text{전년도 노무비율}}{\text{전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times \text{조업 개월수}}$$

②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로 산정

💬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사업체(법인)에 대해서는 공시 보완기간(5월)까지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별도 안내

※ 해당 보험연도(1~3월) 신설된 사업체(법인) 중에서 고용형태 공시 대상이 되는 사업체는 4월까지 확정 후 안내 예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제2조(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시근로자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나.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2.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3.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업의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4. 제8조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
5.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

02 공시 내용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고용형태 현황

사업체 (법인)	사업체명(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공시내용	구분		합계	남성 근로자 수	여성 근로자 수
	① 소속 근로자	합계	명	명	명
		② 단시간근로자 수 합계 (④ + ⑥)	명	명	명
		③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수	명	명	명
		④ 단시간근로자 수	명	명	명
		⑤ 기간제근로자 수	명	명	명
		⑥ 단시간근로자 수	명	명	명
		⑦ 특기사항			
	소속 외 근로자	⑧ 소속 외 근로자 수	명	명	명
		⑨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 업무내용			

① 소속 근로자 수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호~제3호

※ 소속 근로자 : ①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②기간제 근로자

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

💡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이중 단시간 근로자는 별도 기재

② 기간제 근로자(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

💡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기간제근로자

– 전체 소속 근로자 중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 분류

– 이중 단시간 근로자는 별도 기재

③ 단시간 근로자(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중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중 단시간 근로자 수는 각각 별도 기재

〈소속근로자 수 작성 예시〉

-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수: 1000명(남성: 700명, 여성: 300명)
그 중 단시간 근로자 300명(남성: 200명, 여성: 100명)
- ☑ 기간제 근로자 수: 500명(남성: 200명, 여성: 300명)
그 중 단시간 근로자 150명(남성: 60명, 여성: 90명)

소속근로자 수 작성

공시내용	구분		합계	남성 근로자 수	여성 근로자 수
	① 소속 근로자	합계	1,500명	900명	600명
		② 단시간근로자 수 합계 (④ + ⑥)	450명	260명	190명
		③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수	1,000명	700명	300명
		④ 단시간근로자 수	300명	200명	100명
		⑤ 기간제근로자 수	500명	200명	300명
		⑥ 단시간근로자 수	150명	60명	90명

고용형태 공시제 Q&A: <소속 근로자>

Q4 기업 임원도 공시대상 근로자로 포함해야 하나요?

- ➔ 원칙적으로 업무대표권 및 업무집행권이 있는 기업의 임원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공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칭이 이사, 상무 등이라고 해도 실질적인 업무집행권이 없는 경우, 근로자로 보아 공시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Q5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파견사업주의 경우 해당 사업주가 사용하여 파견하는 근로자를 소속 근로자로 공시해야 하나요?

- ➔ 공시 대상인 소속 근로자와 소속 외 근로자는 공시 대상 사업주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파견사업주의 경우 파견기업과 직접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본사 근무 인력, 파견근로자 불문하고 모두 소속 근로자로 공시해야 합니다.

Q6 기간제 근로자 중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된 근로자도 있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도 있는데, 모두 공시해야 하나요?

- ➔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라면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공시 대상이 되므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에 상관없이 공시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때 외국인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라면 법령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로 공시해야 합니다.

Q7 국내 법인이 해외 사업장에 국내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 해당 근로자도 소속 근로자로 공시해야 하나요?

- ➔ 국내 법인이 해외 사업장에 국내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국내 법인의 소속 근로자이므로 공시대상에 포함됩니다.



Q8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사립대학교 교수, 교사 등도 소속 근로자로 공시해야 하나요?

- ➔ 4대 보험 가입 여부가 근로자성과 반드시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학교 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근로자라면 소속 근로자로 공시해야 합니다.



Q9 2년 미만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도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라도 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분류하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도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Q10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가요, 기간제 근로자인가요?

- ➡ ‘연봉계약’은 1년 동안의 임금을 정하는 계약으로 성과에 따라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봉이 삭감된다고 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되거나 근무기간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면 ‘기간제 근로자’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도 1년 등으로 한정한 경우라면 ‘기간제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Q11 건설업 등의 경우 직접 고용한 단순노무자 또는 일용근로자가 있는데 어느 항목에 공시해야 하나요?(인력소개소를 통해 일 단위의 근로를 제공하는 인력을 고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 ➡ 인력소개소 등을 통해 소개받아 근로계약기간을 단기간(일/주/월) 또는 부정기적으로 정하여 직접 고용한 경우 사용기간을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분류합니다. 다만, 도급업체가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원청 사업장에서 근로하게 한 경우라면 ‘소속 외 근로자’로 분류합니다.



통상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구별 기준은 무엇인가요?

-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단시간 근로자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 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통상·단시간 근로자의 중요한 구별 기준은 ‘소정 근로시간’입니다.

〈1주 4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 ➔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법정근로시간) 근로를 하는 전일제 근로자를 기본으로 규정하고 있음
- 위와 같은 1주 40시간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있는 경우 그를 통상 근로자로 보고 그와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보다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판단

〈1주 4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없는 경우〉

- ➔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 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를 통상 근로자로 보고,
- 그 근로자보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판단

〈같은 종류 업무의 범위〉

- ➔ “동종업무” 여부는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 같은 직군 또는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판단함이 합리적임
 - 특히 업무의 이질성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구별되어 규정되는지 여부가 중요
- ➔ 이 경우 “동종업무” 여부는 실제 업무 내용을 따져 판단하되,
-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규정, 사회보험과 관련한 취급 실태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함

사 례

사례 1 편의점에서 5명의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모두 판매 업무를 수행, 근로자 모두 소정근로시간이 동일한 경우

구분	근무일수	소정근로시간
A	주 5일	주 20시간
B	주 5일	주 20시간
C	주 4일	주 20시간
D	주 4일	주 20시간
E	주 4일	주 20시간

☞ 모든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미만

☞ 모든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판매 업무(동종)를 수행하고 있으나, 소정근로시간이 동일하여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가 없어, 통상근로자가 없는 상황

☞ 통상근로자가 없으므로 소정근로시간 비교를 통한 단시간 근로자 판단 불가

☞ A, B, C, D, E 모두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없음

사례 2 편의점에서 5명의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모두 판매 업무를 수행,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

구분	근무일수	근무시간	소정근로시간	비고
A	주 5일	23~08	주 40시간	기간제
B	주 5일	18~23	주 25시간	"
C	주 2일(주말)	23~08	주 16시간	"
D	주 2일(주말)	12~18	주 12시간	"
E	주 2일(주말)	18~23	주 10시간	"

☞ A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므로 다른 근로조건의 비교 없이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A가 통상근로자에 해당

☞ A와 비교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B, C, D, E가 단시간근로자가 됨

사례 3 편의점에서 5명의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모두 판매 업무를 수행,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없는 경우

구분	근무일수	근무시간	소정근로시간	비고
A	주 5일	23~07	주 35시간	기간제
B	주 5일	18~23	주 25시간	"
C	주 2일(주말)	23~08	주 16시간	"
D	주 2일(주말)	12~18	주 12시간	"
E	주 2일(주말)	18~23	주 10시간	"

☞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근로자가 없으므로 같은 사업장의 근로자 중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인 A가 통상근로자에 해당

☞ A와 비교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B, C, D, E가 단시간근로자가 됨

고용형태 공시제 Q&A: <소속 외 근로자>



Q13 사업주 간 ‘납품계약’에 의한 근로자(마트 등에 상주하는 납품업체 직원 등)도 공시의무 사업주의 ‘사용 근로자’로 보아야 하나요?

- ➔ 파견, 하도급, 용역계약 외에 ‘납품계약’의 경우 계약의 대상이 ‘물품거래’이므로 공시의무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시 대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14 공시의무 사업주의 사업장에 간헐적·임시적으로 출입하는 근로자도 공시의무 사업주의 ‘사용 근로자’로 보아야 하나요?

- ➔ 제품 판매·개발 등 조사·연구용역, 사무기기 수리와 같이 간헐적·임시적으로 사업장을 출입하여 근로하는 자는 공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간헐적·임시적 출입 근로자는 현실적으로 파악 불가능, 공시 확인 어려움



Q15 건설 현장의 덤프트럭, 타워크레인, 레미톤, 굴삭기 등의 운전기사도 공시의무 사업주의 ‘사용 근로자’로 보아야 하나요?

- ➔ 건설기계 및 설비의 운전자는 근로 제공의 목적이 아닌 장비의 임대 zu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공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② 소속 근로자 특기사항

공시내용	구분		합계	남성 근로자 수	여성 근로자 수
	① 소속 근로자	합계	명	명	명
		② 단시간근로자 수 합계 (④ + ⑥)	명	명	명
		③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수	명	명	명
		④ 단시간근로자 수	명	명	명
		⑤ 기간제근로자 수	명	명	명
		⑥ 단시간근로자 수	명	명	명
		⑦ 특기사항			
	소속 외 근로자	⑧ 소속 외 근로자 수	명	명	명
		⑨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 업무내용			

☞ 소속근로자 고용형태 현황 공시내용에 큰 변동이 있는 경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은

– ‘특기 사항’ 기재란을 활용하여 사유 등을 기재

예시

- 퇴직 후 재고용, 임신·출산·육아 여성 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청년 일자리 기회제공 등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③ 소속 외 근로자 수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4호

공시내용	구분		합계	남성 근로자 수	여성 근로자 수
	① 소속 근로자	합계	명	명	명
		② 단시간근로자 수 합계 (④ + ⑥)	명	명	명
		③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수	명	명	명
		④ 단시간근로자 수	명	명	명
		⑤ 기간제근로자 수	명	명	명
		⑥ 단시간근로자 수	명	명	명
		⑦ 특기사항			
	소속 외 근로자	⑧ 소속 외 근로자 수	명	명	명
		⑨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 업무내용			

☞ 해당 사업체(법인)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 대부분 사업주간 파견, 용역, 도급 계약에 의해 근무(아웃소싱)

– (예시) 청소, 경비, 주차장 관리, 전산·홍보 지원, 사무보조, 비서, 생산라인 등에 종사하는 파견·용역·하도급 근로자

* 사업장 밖의 근로자, 사업장 내 임대매장 근로자, 납품업체 근로자는 제외

📍 청소, 경비, 주차장 관리 등 위의 예시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공시의무 사업주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소속 근로자로 공시해야 합니다.

고용형태 공시제 Q&A: <소속 외 근로자>

Q16 소속 외 근로자를 ‘사용’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며, 직접고용 관계에서의 (근로기준법상) ‘사용’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직접 고용관계에서 ‘사용’은 근로계약 관계를 통해 지배·종속관계가 있는 것을 의미하며, 소속 외 근로자를 ‘사용’한다는 것은 다른 사업주와 고용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파견법(근로자 파견) 또는 민법(용역, 하도급 등) 등에 의해 공시의무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업무의 일부를 맡아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파견·용역·하도급업체 사업주가 결정

Q17 기업(A사)에서 특정 업무를 다른 업체(B사)에 하도급을 주고, 하도급 업체가 동 업무를 다른 업체(C사)에 재하도급을 주어 하도급업체와 재하도급 업체가 원청업체에 들어와 함께 작업을 하는 경우 소속 외 근로자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원청업체(A)는 하도급업체(B)와 재하도급업체(C) 직원을 모두 자신의 소속 외 근로자로 합산하여 공시해야 합니다. 한편, 하도급업체(B)도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으로 공시의무가 있는 사업주라면 자신의 사업(장)을 공시할 때 재하도급 업체(C) 직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소속 외 근로자로 공시해야 합니다.

* 고용형태 공시제도의 목적은 상시 300인 이상 기업의 총 고용량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개별 기업의 고용형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사업체(법인)별로 각각 공시해야 합니다.



신사옥 건설을 위하여 도급 계약 체결 후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사옥 건설을 위한 건설 도급 근로자들도 ‘소속 외 근로자’에 포함해야 하나요?

- ➔ ‘소속 외 근로자’란 공시의무 사업주가 본연의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계속적으로 위임·위탁하여 사용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신사옥 건설공사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에 그 건설공사는 공시의무 사업주의 본연의 사업목적 수행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공시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병원, 백화점, 마트 등 임대매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소속 외 근로자’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 ➔ 임대료 지불을 주 내용으로 하는 등 임대계약(영업이익 또는 매출액과 연동 또는 고정율로 임대료 지불)을 체결한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임대매장 근로자)는 공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매장*의 경우, 공시의무 사업주와는 독립된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므로 공시의무 사업(장)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제외합니다.

* 병원의 매점, 백화점 매장 등이 해당되며, 공시 대상으로 포함하여도 직접고용 가능성은 낮음

4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 업무내용

공시내용	소속 외 근로자	⑧ 소속 외 근로자 수	명	명	명
		⑨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 업무내용			

☞ 한국고용직업분류(중분류)〈붙임5〉를 참고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소속 외 근로자 (파견·용역·하도급)의 주요 업무 기재

– 소속 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체(법인)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속 외 근로자가 해당 사업체(법인)에서 수행하는 주요 업무를 모두 기재

☞ 소속 외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공시내용에 큰 변동이 있는 경우, 소속 외 근로자의 사용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은 해당 사유 기재*

* 공시 입력화면의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 업무내용 아래 '특기사항'에 기재

예시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 업무내용	① A기업이 다른 하나의 기업(B기업)과 파견, 용역, 도급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B기업 근로자가 수행하는 대표적인 업무를 기재 * 예시) A기업과 B기업과 '전산장비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속 외 근로자가 수행하는 주요업무 내용을 '83.전기·전자설치·정비·생산직'으로 입력
	② A기업이 여러 개의 기업(B기업, C기업, D기업)과 파견, 용역, 도급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B기업, C기업, D기업의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대표적인 업무를 각각 기재 * 예시) A기업이 B기업과 '일반기계 조립 관련 계약', C기업과 '컴퓨터 설치 수리 계약', D기업과 '전기·전자기기 설치 계약'을 각각 체결한 경우 소속 외 근로자가 수행하는 주요업무내용을 '81.기계설치·정비·생산직', '83.전기·전자설치·정비·생산직', '84.정보통신설치·정비직'으로 각각 입력

03 공시 방법



① 공시 기준시점 및 공시 기한

매년 3월 31일 현재 시점에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고용형태 현황을
4월 30일까지 공시

💬 공시기준 시점

- 기업의 근로자 현황은 계속적으로 변동(입사, 퇴사 등)하므로 특정 시점(3월 31일)을 기준으로 현황을 파악하는 것임

☞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연간 단위(1년)'이지만, 고용형태 현황은 매년 3. 31. 기준 '저량 (stock)' 개념임을 유의

– 다만, 3월 31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근무일을 기준으로 함

- 3월 31일 현재 시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시하는 것이므로, 3월 31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는 공시대상 근로자 산정 시 제외

* 출근여부와 상관없이 3.31.자로 고용계약기간이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면 공시대상임(용역, 파견 등 근로자의 경우도 3.31.자로 계약기간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라면 공시대상에 포함)

💬 공시기준 시점

-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
- 연 1회
- 고용형태공시제 전용 사이트(www.work.go.kr/gongsi)

② 회원 가입 및 아이디 관리

회원 가입

- 고용형태공시제 전용 사이트(www.work.go.kr/gongsi)를 통해 고용형태공시제 입력 화면으로 접속
- 고용형태 공시시스템에 공시정보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워크넷과 별도로 '공시전용 회원가입' 필요

WORKNET
고용형태공시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기업 입력용
공시전용 회원가입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

대국민 공개용
고용형태 공시정보 보기

- 2015년부터는 매년 3월31일 기준 고용형태현황을 해당연도 4월30일까지 공시해야 합니다.
- * 2023년 고용형태 공시정보 입력기간 : 2023년 4월 1일 ~ 4월 30일
- 기존 워크넷 회원 ID로는 로그인할 수 없으니 공시전용 회원가입 하세요.
-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고용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고용형태 공시제 문의처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 © 고용노동부 all rights reserved.

아이디 관리

- 최초로 고용형태 현황을 입력한 ID를 '공시전용 ID'로 지정 · 관리
 - 고용형태 현황 입력기간(4.1~4.30) 동안에는 지정된 ID로 로그인하여 공시내용을 수시로 수정 가능
 - * 이미 ID를 발급 받은 경우 그대로 사용
 - 분리공시를 위해 신규발급을 희망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의 고용형태 공시제 담당자에게 ID 발급 요청
- 지정된 ID 분실시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활용 가능
 - * 기업공인인증서 필요

③ 공시정보 입력

공시정보 입력

- ①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체크리스트 확인 후 공시자료 입력 가능

고용형태 공시제

- 고용형태 공시정보 관리
- 고용형태 공시제 안내**
 - 추진경과
 - 고용형태 공시제도 개요
 - 공시관련 세부내용
 - 공시의무 사업주 판단
 - 사업주 개념
 - 상시근로자 개념 및 산정방
 - 공시기준 시험 및 공시기한
 - 공시내용
- 고용형태 공시제 자료실
- 확장정보 관리
 - 회원 정보 수정
 - 사업장 정보 수정

고용형태 공시정보 관리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 공시의무 사업주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입니다.
 ※ ‘상시근로자수’는 전년도 매출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

1 전년도 상시근로자수

귀사의 2021년도(전년도) 상시근로자 수는 **0,000명**입니다.
 따라서, 귀사는 2022년 고용형태 현황 공시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해당 합니다.

‘21년 상시근로자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000	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귀사에서 2021년(전년도)에 공시한 내용을 고용보험 DB와 비교 분석한 결과, 데이터 값에 차이가 커서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공시 입력값이 고용보험 DB(피보험자 규모)와 차이가 발생한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이유를 아래 빈칸에 기재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예: 사학연금 가입자 다수 고용,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자 다수 고용,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 등)

이유를 입력해 주세요.

2 유의사항 체크리스트

- 귀하는 ‘22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수를 입력하여야함을 이해하셨습니까?
 * 3월 31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는 공시대상 근로자에서 제외
☐ 네 ☐ 아니오
- “단시간 근로자”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통상근로자에 비해 주 소정근로시간이 1시간이라도 짧은 경우 단시간 근로자, 15시간 미만만이 단시간 근로자가 아님
☐ 네 ☐ 아니오
- “소속외 근로자”란 공시의무 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파견, 용역, 도급 계약에 의해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시) 청소, 미화, 구내식당, 경비, 주차장 관리, 전산 홍보 지원, 사무보조, 비서, 생산라인 등에 종사하는 파견 하도급 용역 근로자
 * 사업장 밖의 근로자, 사업장 내 임대매장 근로자, 납품업체 근로자는 제외
☐ 네 ☐ 아니오
- 향후, 사업주가 공시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증빙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네 ☐ 아니오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입력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확인

- ② 정확한 정보 입력을 위해 항목간 합계가 수리적으로 맞지 않을 경우 자동 보정되며, 필요한 경우 재입력 안내

고용형태 공시제

고용형태 공시제 관리

고용형태 공시제 안내

- 주권결과
- 고용형태 공시제도 개요
- 공시관련 세부내용
 - 공시리무 사업주 판단
 - 사업주 개념
 - 상시근로자 개념 및 산정방법
 - 공시기준 시점 및 공시기간
 - 공시내용

고용형태 공시제 자료실

해령정보 관리

- 해령 정보 수정
- 사업장 정보 수정

고용형태 공시정보 관리

▶ **《공시관련 안내》 4월 1일 ~ 4월 30일은 고용형태 현황 입력기간입니다.**
 ▶ 입력하신 공시정보는 2017년 7월 1일, 워크넷(www.work.go.kr)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 고용형태 공시담당자 설정과 전화번호, 팩스번호도 공개됩니다.
 ▶ 문의사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지역협력과(팀)로 문의 바랍니다.

▶ **▶▶▶ 고용형태 공시제 문의처 보기**

3. 고용형태 현황

사업(장)

사업장명(법명명) : 테스트

사업등록번호 : 0000000000000

소재지 :

전화번호 : - -

대표자 : 김대호 11

담당자 성명 :

2017년

조회

구분		합계	남성근로자수	여성근로자수
공시내용	합계	0 명	0 명	0 명
	단시간 근로자 수	0 명	0 명	0 명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수	0 명	명	명
	단시간 근로자 수	0 명	명	명
	기간제 근로자 수	0 명	명	명
	단시간 근로자 수	0 명	명	명
소속 외 근로자 수		0 명	명	명
특기사항				

* 특기사항은 퇴직 후 재고용, 출산 일시 등의 고용안정, 고용촉진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등의 특기사항을 기재합니다.

등록

취소

사업장 삭제

사업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업종 :

담당자 성명 :

대표자 : 강호돈

구분		합계	남성근로자수	여성근로자수
공시내용	합계	명	명	명
	단시간 근로자 수	명	명	명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수	명	명	명
	단시간 근로자 수	명	명	명
	기간제 근로자 수	명	명	명
	단시간 근로자 수	명	명	명
소속 외 근로자 수		명	명	명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 업무내용		직종찾기		

등록

사업장 추가

취소

☞ 〈소속 외 근로자 주요업무 내용(직종) 찾기 화면〉

업종찾기

☐ 관리직	☐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 금융·보험 관련직	☐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 관련직
☐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 보건·의료 관련직
☐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 운전 및 운송 관련직	☐ 영업 및 판매 관련직
☐ 경비 및 청소 관련직	☐ 미용·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직
☐ 음식서비스 관련직	☐ 건설 관련직
☐ 기계 관련직	☐ 재료 관련직(금속·유리·점토 및 시멘트)
☐ 화학 관련직	☐ 섬유 및 의복 관련직
☐ 전기·전자 관련직	☐ 정보통신 관련직
☐ 식품가공 관련직	☐ 농림어업 관련직
☐ 군인	

적용

☞ 입력기간(4월)

- 공시기간(4.1~4.30)동안 자유롭게 입력 또는 수정 가능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고용형태 공시절차 등) ①「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해당 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근무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연도 4월 30일 까지 공시해야 한다.(후략)

☞ 보완기간(5월)

- 정확한 공시정보 입력을 위해 입력기간 종료 후 보완기간을 두어 공시정보 수정 가능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용형태공시제 담당자는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 내용을 잘못 공시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공시의무 이행 및 정확한 공시 입력 지원·안내

* 특히, 사업주가 입력한 공시정보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대조하여 차이가 큰 경우 집중 지원·안내하고 **업종을 잘못 입력하지 않도록 지원·안내**

- 보완기간 종료 후엔 추가 수정 불가

4 고용형태 현황 공시정보 공개

- 고용형태 현황 공시정보는 별도 로그인 절차 없이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운영 (최근 3년치 누적 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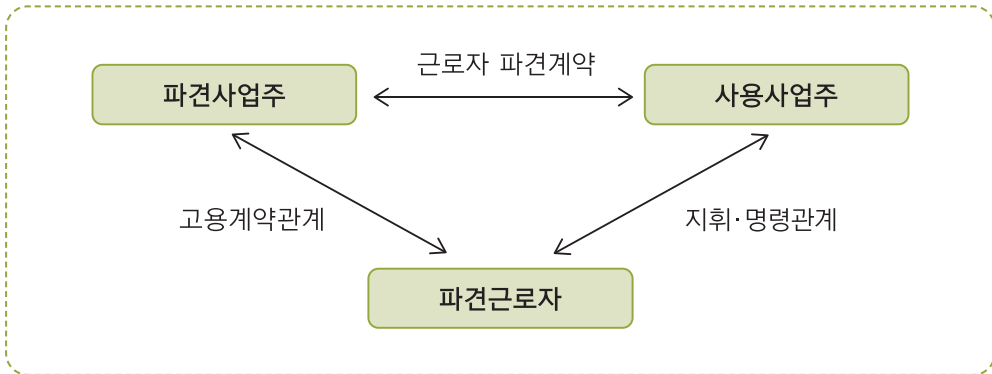
– 미공시 기업(법인) 명단도 대국민 공개

고용형태공시 시스템(www.work.go.kr/gongsi)에서 확인

– 메인 화면의 우측 ‘대국민 공개용 고용형태 공시정보 보기’ 메뉴 클릭 → 공시제 화면으로 이동

붙임4 ▶ 파견, 용역, 사내하도급의 개념

- 1 (파견)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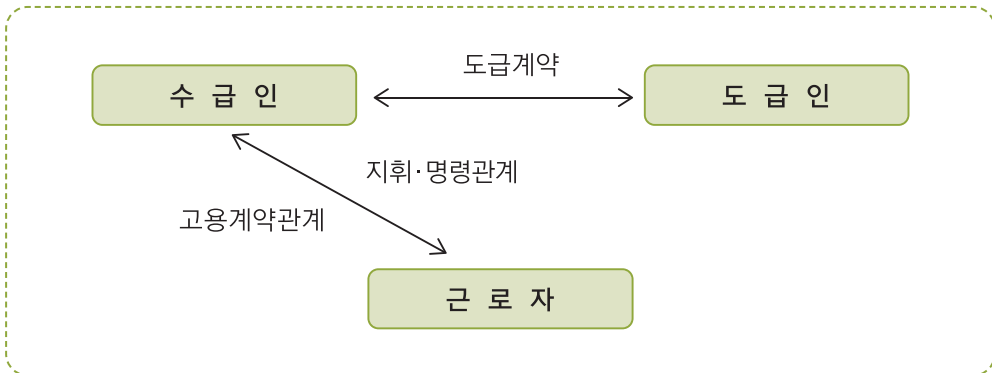


2 도급·위임

- (도급)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은 그 일(유·무형)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민법 제664조)

– 수급인 스스로의 재량과 책임 하에서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

- (위임)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사무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680조)



3 사내하도급 · 용역

① **사내하도급(사내하청)**은 원도급업체가 자기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의 일부를 하도급업체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는 **도급(또는 위임)에 해당**

– **용역**은 거래의 대상이 상품이 아닌 서비스(용역)로 용역업체에 일정한 업무를 맡겨 수행하도록 하는 형태로서, 계약 내용에 따라 **민법상 도급(또는 위임)에 해당**

* 예: 경비용역사업(경비업법), 청소용역사업(공중위생관리법) 기술용역사업(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② 사내하도급과 용역의 구별

– (공통점) **민법상 도급 또는 위임 계약**으로 볼 수 있고,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주의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업무에 종사**

– (차이점) **사내하도급**은 제조 · 수리 · 시공 · **용역** 등의 수행을 위해 **원사업주의 사업장 내에** 들어가서 업무를 수행하는 **도급**을 말하며,

– **용역**은 도급의 한 형태이나 근로하는 장소가 원청의 사업장 내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내하도급과 차이가 있음

* 즉, 용역 중에 '원청의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용역'은 **사내하도급**으로 볼 수 있음

붙임5 ▶ 한국고용직업분류(2018 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직업명
0	01 관리직 (임원·부서장)	011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111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공공단체임원
			0112 기업 고위임원
		012 행정·경영·금융·보험 관리자	0121 정부행정 관리자
			0122 경영지원 관리자
			0123 마케팅·광고·홍보 관리자
			0124 금융·보험 관리자
		013 전문서비스 관리자	0131 연구 관리자
			0132 교육 관리자
			0133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리자
			0134 보건·의료 관리자
			0135 사회복지 관리자
			0136 예술·디자인·방송 관리자
			0137 정보통신 관리자
			0139 부동산·조사·인력알선 및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
		014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 청소 관리자	0141 미용·여행·숙박·스포츠 관리자
			0142 음식서비스 관리자
			0143 경비·청소 관리자
		015 영업·판매·운송 관리자	0151 영업·판매 관리자
			0152 운송 관리자
			0159 기타 판매 및 고객센터 관리자
		016 건설·채굴·제조·생산 관리자	0161 건설·채굴 관리자
			0162 전기·가스·수도 관리자
			0163 제조·생산 관리자
			0169 기타 건설·전기 및 제조 관리자
	02 경영·행정· 사무직	021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0210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022 경영·인사 전문가	0221 경영·진단 전문가
			0222 인사·노무 전문가
		023 회계·세무·감정 전문가	0231 회계사
			0232 세무사
			0233 관세사
			0234 감정 전문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직업명
0	02	경영·행정·사무직	0241 광고·홍보 전문가
			0242 조사 전문가
			0243 상품 기획자
			0244 행사 기획자
			0251 조세행정 사무원
			0252 관세행정 사무원
			0253 병무행정 사무원
			0254 국가·지방행정 사무원
			0255 공공행정 사무원
			0261 기획·마케팅 사무원
			0262 인사·교육·훈련 사무원
			0263 총무 사무원 및 대학 행정조교
			0264 감사 사무원
			0271 회계 사무원
			0272 경리 사무원
			0281 무역 사무원
			0282 운송 사무원
			0283 자재·구매·물류 사무원
			0284 생산·품질 사무원
			0291 안내·접수원 및 전화교환원
			0292 고객 상담원 및 모니터 요원
			0293 통계사무원
			0294 비서
			0295 전산자료 입력원 및 사무 보조원
			0299 기타 사무원
	03	금융·보험직	0311 투자·신용 분석가
			0312 자산 운용가
			0313 보험·금융상품 개발자
			0314 증권·외환 딜러
			0315 손해사정사
			0319 기타 금융·보험 전문가

03. 공시 방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직업명
0	03 금융·보험직	032 금융·보험 사무원	0321 은행 사무원
			0322 증권 사무원
			0323 보험 심사원 및 사무원
			0324 출납창구 사무원
			0325 수금원 및 신용 추심원
			0329 기타 금융 사무원
		033 금융·보험 영업원	0331 대출 및 신용카드 모집인
			0332 보험 모집인 및 투자 권유 대행인
1	연구직 및 과학 기술직	11 인문·사회과학 연구직	1101 인문과학 연구원
			1102 사회과학 연구원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1211 자연과학 연구원
			1212 자연과학 시험원
		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1221 생명과학 연구원
			1222 생명과학 시험원
			1223 농림어업 시험원
		131 컴퓨터하드웨어·통신공학 기술자	1311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및 연구원
			1312 통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1320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133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133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1333 웹 개발자
			1339 기타 컴퓨터 전문가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134 데이터·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1341 데이터 전문가
			1342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
			1343 정보시스템 운영자
			1344 웹 운영자
			1349 기타 데이터 및 네트워크 전문가
		135 정보보안 전문가	1350 정보보안 전문가
		136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1360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직업명
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401 건축가
			1402 건축공학 기술자
			1403 토목공학 기술자
			1404 조경 기술자
			1405 도시·교통 전문가
			1406 측량·지리정보 전문가
			1407 건설자재 시험원
	15 제조 연구개발 직 및 공학기술 직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11 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12 로봇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13 기계·로봇공학 시험원
		152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21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22 금속·재료공학 시험원
		153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31 전기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32 전자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33 전기·전자공학 시험원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41 화학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42 화학공학 시험원
		155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51 가스·에너지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52 가스·에너지공학 시험원
			1553 환경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54 환경공학 시험원
			1555 보건위생·환경 검사원
		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61 섬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62 섬유공학 시험원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71 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72 식품공학 시험원
		158 소방·방재·산업안전·비파괴 기술자	1581 방재 기술자 및 연구원
			1582 소방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83 소방공학시험원
			1584 산업 안전원 및 위험 관리원
			1585 비파괴 검사원
		159 제도사 및 기타 인쇄·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91 제도사
			1599 기타 인쇄·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03. 공시 방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직업명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211 대학 교수 및 강사	2111 대학 교수
			2112 대학 시간강사
		212 학교 교사	2121 중·고등학교 교사
			2122 초등학교 교사
			2123 특수교육 교사
			2129 기타 교사
		213 유치원 교사	2130 유치원 교사
		214 문리·기술·예능 강사	2141 문리·어학 강사
			2142 컴퓨터 강사
			2143 기술·기능계 강사
			2144 예능 강사
			2145 학습지·교육교구 방문강사
			2149 기타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215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2151 장학관·연구관 및 교육 전문가
			2152 대학 교육 조교(연구 조교 포함)
			2153 교사보조 및 보육보조 서비스 종사원
		221 법률 전문가	2211 판사 및 검사
			2212 변호사
			2213 법무사 및 집행관
			2214 변리사
			2219 기타 법률 전문가
		222 법률 사무원	2220 법률 사무원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2311 사회복지사
			2312 상담 전문가
			2313 청소년 지도사
			2314 직업상담사
			2315 시민단체 활동가
		232 보육교사 및 기타 사회복지 종사자	2321 보육교사
			2329 기타 사회복지 종사원
		233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2331 성직자
			2339 기타 종교 종사원
		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2401 경찰관 및 수사관
			2402 소방관
			2403 교도관 및 소년원학교 교사
		250 군인	2501 영관급 이상 장교
			2502 위관급장교
			2503 부사관
			2509 기타 군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직업명
3	보건·의료직	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3011 전문 의사
			3012 일반 의사
			3013 한의사
			3014 치과 의사
		302 수의사	3020 수의사
		303 약사 및 한약사	3030 약사 및 한약사
		304 간호사	3040 간호사
		305 영양사	3050 영양사
		306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3061 임상병리사
			3062 방사선사
			3063 치과기공사
			3064 치과위생사
			3065 물리 및 작업 치료사
			3066 임상심리사
			3067 재활공학 기사
			3069 기타 치료·재활사 및 의료기사
		307 보건·의료 종사자	3071 응급구조사
			3072 위생사
			3073 안경사
			3074 의무기록사
			3075 간호조무사
			3076 안마사
			3079 기타 보건·의료 종사원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411 작가·통번역가	4111 작가
			4112 번역가 및 통역가
			4113 출판물 전문가
		412 기자 및 언론 전문가	4120 기자 및 언론 전문가
		413 학예사·사서·기록물관리사	4131 학예사 및 문화재 보존원
			4132 사서 및 기록물 관리사
		414 창작·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4141 화가 및 조각가
			4142 사진작가 및 사진사
			4143 만화가 및 만화영화 작가
			4144 국악인 및 전통 예술인
			4145 지휘자, 작곡가 및 연주가
			4146 가수 및 성악가
			4147 무용가 및 안무가
			4149 기타 시각 및 공연 예술가

03. 공시 방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직업명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415 디자이너	4151 제품 디자이너
			4152 패션 디자이너
			4153 실내장식 디자이너
			4154 시각 디자이너
			4155 미디어 콘텐츠 디자이너
		416 연극·영화·방송 전문가	4161 감독 및 기술감독
			4162 배우 및 모델
			4163 아나운서 및 리포터
			4164 촬영 기사
			4165 음향·녹음 기사
			4166 영상·녹화·편집 기사
			4167 조명·영상 기사
			4169 기타 연극·영화·방송 종사원
		417 문화·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4171 공연·영화 및 음반 기획자
			4172 연예인매니저 및 스포츠매니저
		420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종사자	4201 스포츠 감독 및 코치
			4202 직업 운동선수
			4203 경기 심판 및 경기 기록원
			4204 스포츠강사, 레크리에이션강사 및 기타 관련 전문가
			4209 기타 스포츠 및 여가서비스 종사원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511 미용 서비스원	5111 이용사
			5112 미용사
			5113 피부 및 체형 관리사
			5114 메이크업 아티스트 및 분장사
			5115 반려동물 미용 및 관리 종사원
			5119 기타 미용 서비스원
		512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5121 결혼상담원 및 웨딩플래너
			5122 혼례 종사원
			5123 장례 지도사 및 장례 상담원
			5124 점술가 및 민속신앙 종사원
			5129 기타 개인 생활 서비스원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521 여행 서비스원	5211 여행상품 개발자
			5212 여행 사무원
			5213 여행 안내원 및 해설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직업명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522	항공기·선박·열차 객실승무원	5221 항공기 객실승무원
						5222 선박·열차 객실승무원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5230 숙박시설 서비스원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5240 오락시설 서비스원
		53	음식 서비스직	531	주방장 및 조리사	5311 주방장 및 요리 연구가
						5312 한식 조리사
						5313 중식 조리사
						5314 양식 조리사
						5315 일식 조리사
						5316 바텐더
						5317 음료조리사
						5319 기타 조리사
				532	식당 서비스원	5321 패스트푸드 준비원
						5322 홀서빙원
						5323 주방 보조원
						5324 음식 배달원
						5329 기타 음식 서비스 종사원
		54	경호·경비직	541	경호·보안 종사자	5411 경호원
						5412 청원경찰
						5413 시설·특수 경비원
						5419 기타 경호·보안 종사원
				542	경비원	5420 경비원(건물 관리원)
		55	돌봄 서비스직 (간병·육아)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5501 요양 보호사 및 간병인
						5502 육아 도우미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561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5611 청소원
						5612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5613 배관 세정원 및 방역원
						5614 구두 미화원
						5615 세탁원(다림질원)
						5616 가사 도우미
				562	검침·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5621 계기 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
						5622 자동판매기 관리원
						5623 주차 관리·안내원
						5624 검표원
						5629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원

03. 공시 방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직업명
6 영업·판매·안전·운송직	61 영업·판매직	611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6110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612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6121 기술 영업원
			6122 해외 영업원
			6123 자동차 영업원
			6124 제품·광고 영업원
			6125 상품 중개인 및 경매사
			6129 기타 기술 영업·중개 종사원
		613 텔레마케터	6130 텔레마케터
		614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자	6140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원
		615 판매 종사자	6151 상점 판매원
			6152 통신 기기·서비스 판매원
			6153 온라인 판매원
			6154 상품 대여원
			6155 노점 및 이동 판매원
			6156 방문 판매원
			6157 주유원(가스충전원)
	62 운전·운송직	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6161 매장 계산원 및 요금 정산원
		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6162 매표원 및 복권 판매원
			6171 홍보 도우미 및 판촉원
			6179 기타 판매 단순 종사원
		621 항공기·선박·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6211 항공기 조종사
			6212 선장, 항해사 및 도선사
			6213 철도·전동차 기관사
			6214 관제사
			6219 기타 철도운송 종사원
		622 자동차 운전원	6221 택시 운전원
			6222 버스 운전원
			6223 화물차·특수차 운전원
			6229 기타 자동차 운전원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	6230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6241 택배원
			6242 우편물 집배원
			6243 선박승무원 및 관련 종사원(선박객실 승무원 제외)
			6244 하역·적재 종사원
			6249 기타 배달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직업명
7	건설·채굴직	701 건설구조 기능원	7011 강구조물 가공원 및 건립원
			7012 경량철골공
			7013 철근공
			7014 콘크리트공
			7015 건축 석공
			7016 건축 목공
			7017 조적공 및 석재부설원
			7019 기타 건설 구조 기능원
		702 건축마감 기능원	7021 미장공
			7022 방수공
			7023 단열공
			7024 바닥재 시공원
			7025 도배공 및 유리 부착원
			7026 건축 도장공
			7027 새시 조립·설치원
			7029 기타 건축 마감 기능원
		703 배관공	7031 건설 배관공
			7032 공업 배관공
			7039 기타 배관공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7040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7051 광원, 채석원 및 석재 절단원
			7052 철로 설치·보수원
			7059 기타 채굴·토목 종사원
		706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	7060 건설·채굴 단순 종사원
8	설치·정비·생산직	811 기계장비 설치·정비원 (운송장비 제외)	8111 공업기계 설치·정비원
			8112 승강기 설치·정비원
			8113 물품이동장비 설치·정비원
			8114 냉동·냉장·공조기 설치·정비원
			8115 보일러 설치·정비원
			8116 건설·공업 기계 설치·정비원
			8119 농업용 및 기타 기계장비 설치·정비원
		812 운송장비 정비원	8121 항공기 정비원
			8122 선박 정비원
			8123 철도기관차·전동차 정비원
			8124 자동차 정비원
			8129 기타 운송장비 정비원

03. 공시 방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직업명
8	설치·정비·생산직	8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8131 금형원
			8132 금속 공작기계 조작원
			814 냉·난방 설비 조작원
			8140 냉·난방 설비 조작원
			815 자동조립라인·산업용로봇 조작원
			8150 자동조립라인·산업용로봇 조작원
			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8161 일반기계 조립원
			8162 금속기계부품 조립원
		817 운송장비 조립원	8171 자동차 조립원
			8172 자동차 부품 조립원
			8173 운송장비 조립원
		821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작원	8211 금속가공 제어장치 조작원
			8212 금속가공 기계 조작원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822 판금원 및 제관원	8221 판금원
			8222 판금기조작원
			8223 제관원
			8224 제관기조작원
		823 단조원 및 주조원	8231 단조원
			8232 단조기조작원
			8233 주조원
			8234 주조기조작원
		824 용접원	8241 용접원
			8242 용접기조작원
		825 도장원 및 도금원	8251 도장원(도장기조작원)
			8252 도금·금속분무기 조작원
		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261 유리·유리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262 점토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263 시멘트·광물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264 광석·석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269 기타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831 전기공	8311 산업 전기공
			8312 내선 전기공
			8313 외선 전기공
		832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8321 사무용 전자기기 설치·수리원
			8322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8329 기타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833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8330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834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8340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직업명	
8 설치·정비·생산직	83	전기·전자 설치·정비· 생산직	835	전기·전자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351	전기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36	전기·전자 부품·제품 조립원	8352	전자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4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	8360	전기·전자 부품·제품 조립원
					8411	컴퓨터 설치·수리원
					8412	이동전화기 수리원
			842	방송·통신장비 설치·수리원	8419	기타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
					8421	방송장비 설치·수리원
					8422	통신장비 설치·수리원
	85	화학·환경 설치·정비· 생산직	851	석유·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8423	방송·통신·인터넷 케이블 설치·수리원
					8511	석유·천연가스 제조 제어장치 조작원
					8512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852	고무·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8519	기타 석유·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8521	타이어·고무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522	플라스틱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523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고무·플라스틱 제외)
					8524	고무·플라스틱 제품 조립원
			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	8531	상·하수도 처리장치 조작원
					8532	재활용 처리장치·소각로 조작원
	86	섬유· 의복 생산직	861	섬유 제조·가공 기계 조작원	8611	섬유 제조기계 조작원
					8612	직조기·편직기 조작원
					8613	표백·염색기 조작원
			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8621	패턴사
					8622	재단사
					8623	재봉사
					8629	기타 섬유·가죽 기능원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8631	한복 제조원
					8632	양장·양복 제조원
					8633	모피·가죽의복 제조원
					8634	의복·가죽·모피 수선원
					8639	기타 의복 제조원
			864	제화원, 기타 섬유·의복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8641	제화원
					8642	신발 제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8643	세탁 기계 조작원
					8649	기타 직물·신발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8711	제과·제빵원
	87	식품 가공· 생산직	871	제과·제빵원 및 떡 제조원	8712	떡 제조원

03. 공시 방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직업명	
8	설치·정비·생산직	87	식품 가공·생산직	872	식품 가공 기능원	8721	정육원 및 도축원
						8722	김치·밀반찬 제조 종사원
						8723	식품·담배 등급원
						8729	기타 식품 가공 종사원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8731	육류·어패류·낙농품 가공기계 조작원
						8732	제분·도정 기계 조작원
						8733	곡물 가공제품 기계 조작원
						8734	과실·채소 기계 조작원
						8735	음료 제조기계 조작원
						8739	기타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8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881	인쇄기계·사진현상기 조작원	8811	인쇄기계 조작원
						8812	사진 인화·현상기 조작원(사진수정 포함)
				882	목재·펄프·종이 생산기계 조작원	8821	목재 가공기계 조작원
						8822	펄프·종이 제조장치 조작원
						8823	종이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829	기타 목재·종이 기계 조작원
				883	가구·목제품 제조·수리원	8831	가구 제조·수리원
						8832	가구 조립원
						8833	목제품 제조원
				884	공예원 및 귀금속 세공원	8841	공예원
						8842	귀금속·보석 세공원
885	악기·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	8851	악기 제조원 및 조율사				
		8852	간판 제작·설치원				
		8853	유리기능, 복사, 수제 제본 등 기타 기능 종사원				
		8859	주입·포장·상표부착기 및 기타 기계 조작원				
89	제조 단순직	890	제조 단순 종사자	8900	제조 단순 종사원		
9	농림어업직	90	농림어업직	901	작물재배 종사자	9011	곡식작물 재배원
						9012	채소·특용작물 재배원
						9013	과수작물 재배원
						9014	원예작물 재배원
						9015	조경원
		902	낙농·사육 종사자	9021	낙농 종사원		
				9022	가축 사육 종사원		
				9029	기타 사육 종사원		
		903	임업 종사자	9031	조림·산림경영인 및 벌목원		
				9039	임산물 채취 및 기타 임업 종사원		
		904	어업 종사자	9041	양식원		
				9042	어부 및 해녀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9050	농림어업 단순 종사원		
		10항목	35항목	136항목		450항목	

붙임6 ▶ 고용형태 공시제 관련 문의처

※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기 관 명	부 서 명	연 락 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02-2004-7969
서울강남지청	지역협력과	02-3468-4915
서울동부지청	지역협력과	02-2142-8411
서울서부지청	지역협력과	02-2077-6183
서울남부지청	지역협력과	02-2639-2447
서울북부지청	지역협력과	02-950-9745
서울관악지청	지역협력과	02-3282-907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032-460-7106
인천북부지청	지역협력과	032-540-5726
부천시청	지역협력과	032-320-8985
의정부지청	지역협력과	031-828-0847
고양지청	지역협력과	031-920-3987
경기지방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031-230-7672
성남지청	지역협력과	031-788-1546
안양지청	지역협력과	031-463-0701
안산지청	지역협력과	031-412-6990
평택지청	지역협력과	031-646-1202
강원지방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033-250-1944
강릉지청	지역협력과	033-650-2531
원주지청	지역협력과	033-769-0833
태백지청	지역협력팀	033-550-8602
영월출장소	지역협력팀	033-371-6214

03. 공시 방법

기 관 명	부 서 명	연 락 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051-860-2153
부산동부지청	지역협력과	051-559-6638
부산북부지청	지역협력과	051-330-9811
창원지청	지역협력과	055-239-5302
울산지청	지역협력과	052-228-1981
양산지청	지역협력과	055-370-0982
진주시청	지역협력과	055-760-6546
통영지청	지역협력과	055-650-1820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053-667-6177
대구서부지청	지역협력과	053-605-6585
포항지청	지역협력과	054-288-3511
구미지청	지역협력과	054-440-2012
영주시청	지역협력팀	054-639-1171
안동지청	지역협력팀	054-851-8012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062-609-8812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064-728-7114
전주시청	지역협력과	063-270-9280
익산지청	지역협력과	063-839-0006
군산지청	지역협력과	063-450-0606
목포지청	지역협력과	061-280-0110
여수지청	지역협력과	061-650-0262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042-470-8314
청주시청	지역협력과	043-299-1392
천안지청	지역협력과	041-620-9501
충주시청	지역협력과	043-880-8602
보령지청	지역협력과	041-930-6266
서산출장소	지역협력과	041-661-5601

메모

Memo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메모

Memo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25 horizontal dotted lines.

메모

Memo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고용형태 공시제도

발행일	2024년 3월
발행처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주소	(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인쇄처	동명기획 ☎ 044)868-7542

- 이 책자를 허가 받지 않고 복제하거나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발행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